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6. . . (제 회)	

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은경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6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1차 회의('25.12.29)에서 위원회 정부위원을 2인 축소하는 대신 민간위원을 2인 확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위임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”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과 기후에너지 환경부차관을 삭제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생 략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)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.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재정경제부차관 2.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</u> 3. 교육부차관 4. 행정안전부차관 5. <u>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</u> 6. 고용노동부차관 7. 삭제 8. 삭제 9. 식품의약품안전처장 	<p>제4조(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) (현행과 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재정경제부차관 2. <u>삭제</u> 3. 교육부차관 4. 행정안전부차관 5. <u>삭제</u> 6. 고용노동부차관 7. 삭제 8. 삭제 9.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의료정책과	
연 락 처	044-202-2414